

1.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 승인, 배수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0조의6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과 개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시로 위임함

나.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내용 규정(안 제71조의3제1항)

공공폐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연결상태 진단,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술진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다. 오·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72조)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등의 신청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식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 중 “법 제21조의4제4항”을 “법 제21조의4제8항”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4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폐수 등의 특성 조사
2. 오수·폐수 등의 유입·유출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기간
4. 기타 개선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완충저류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3항

에 따라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수립한 개선계획을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가.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나.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 폐수관로

가. 유량 및 수질조사

나. 폐수관로 연결상태 진단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5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변경 승인 신청도 포함한다)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변경 승인 신청도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승인서 등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따른다.

1.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 별지 제52호

2.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 별지 제53호

3.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 별지 제54호

4.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등) 신고증명서 : 별지 제55호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	부지면적(㎡)					
승인 신청 사항	폐수배출량	㎡/일					
	폐수배출농도	BOD	mg/ℓ	TOC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기타항목	mg/ℓ
	오수 배출량	㎡/일					
	오수배출농도	BOD	mg/ℓ	TOC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기타항목	mg/ℓ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1부.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폐수배출량 및 배출수질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신청하는 경우) 당초 유입처리 승인서(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승인 신청 사항의 배출량 및 농도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확하게 적힌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공장오수, 산업폐수, 기타폐수(연계처리 등)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배관 재질	PVC, PE, GRP, PC, 주철관, 기타	접속방법	접속 맨홀 []
		받이 재질	PVC, PE, PC, 기타		
		평균관경	Ø mm	폐수관로까지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 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폐수관로 파손 시 복구방법	원상복구			
	측정기기 부착	여[], 부[], (부착대상 : 유량계, pH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 량	(m³/일)	
		수질(mg/ℓ)	BOD : , TOC : , SS: , T-N : , T-P : , 기타:	
	사용시작일	년 월 일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계획 설명서 1부.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각 1부.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 8. 유입처리 승인서(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 방법

-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승인받은 사항과 제51조제3항에 따른 유입승인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배수설비 시공자는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인지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승 인 번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제 호			
사 업 장 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관 리 기 관 의 장) 귀 하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등)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용개시, 중지 등)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사용개시, 중지 등)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관 리 기 관 의 장) 귀 하		

승 인 번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제 호			
사업장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폐수배출량	m³/일	오수배출량	m³/일
폐수배출농도	BOD : mg/ℓ , TOC : mg/ℓ , SS : mg/ℓ , T-N : mg/ℓ , T-P : mg/ℓ , 기타항목 : mg/ℓ		
오수배출농도	BOD : mg/ℓ , TOC : mg/ℓ , SS : mg/ℓ , T-N : mg/ℓ , T-P : mg/ℓ , 기타항목 : mg/ℓ		
승인조건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승 인 번 호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제 호			
사 업 장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폐수배출량	m ³ /일	오수배출량	m ³ /일
폐수배출농도	BOD : mg/ℓ , TOC : mg/ℓ , SS : mg/ℓ , T-N : mg/ℓ , T-P : mg/ℓ , 기타항목 : mg/ℓ		
오수배출농도	BOD : mg/ℓ , TOC : mg/ℓ , SS : mg/ℓ , T-N : mg/ℓ , T-P : mg/ℓ , 기타항목 : mg/ℓ		
승인조건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승 인 번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제 호			
사 업 장 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직인			

신 고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등) 신고증명서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용개시, 중지 등)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등)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u>법 제21조의4제4항</u> 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u><신 설></u>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u>법 제21조의4제8항</u> ----- -----. <u>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기술</u> <u>진단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u> <u>21조의4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u> <u>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u> <u>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u> <u>수 · 폐수 등의 특성 조사</u> <u>2. 오수 · 폐수 등의 유입 · 유출</u> <u>시기와 방법의 적정성</u> <u>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u> <u>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u> <u>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u> <u>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u> <u>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u> <u>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u> <u>구체적 해결방안</u> <u>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u> <u>3. 개선기간</u> <u>4. 기타 개선계획 추진에 필요</u> <u>한 사항</u> <u>③ 완충저류시설을 관할하는 지</u> <u>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u>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4제3항에 따라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수립한 개선계획을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 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

1. 공공 폐수처리시설

가.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나.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③ (생략)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 폐수관로

가. 유량 및 수질조사

나. 폐수관로 연결상태 진단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삭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변경 승인 신청도 포함한다)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변경 승인 신청도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신 설>

다.

⑤ 법 제51조제10항-----

-----.

⑥ 영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하는 승인서 등은 다음 각호
의 서식을 따른다.

1.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
별지 제52호

2.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 별지
제53호

3.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 별지 제54호

4.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등) 신고증명서 : 별지 제55호